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15
----------	------

제출년월일 : 2010. 8.  
제출자 : 윤범로 의원 외 8명

## 1. 제정취지

주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안 제6조)
- 마. 장비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3. 입법예고 결과 :

## 4. 기타 참고자료

- 덧붙임 1.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발췌)

## 충주시조례 제 호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 AED)”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4.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치소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소속직원의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
  4.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설치
  5.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제8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계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10.29, 2009.12.14, 2010.3.15>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 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

## 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 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본조신설 2008.6.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법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취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6.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 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찬성자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김재호	<del>Kim</del>	
최근배	<del>Jin</del>	
허영우	<del>Huh</del>	
송석호	<del>Song</del> t. <del>City</del>	
안희윤	<del>An</del>	
26 대 15	<del>26</del> 대 <del>15</del>	
이 %	<del>Lee</del>	
이 %	<del>Lee</del>	
이재윤	<del>Lee</del>	